

별첨7 장애인·중증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안내

□ 편의제공 대상

우리 재단 응시자 중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,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나,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
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
□ 편의제공 신청방법

장애인·중증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 중 희망자는,

- 지원서 접수기간에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
- 필기시험·면접시험 대상자가 되면, 안내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,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,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
- 담당자가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 개별 통보

□ 편의제공 유의사항

- 하단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고하여,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지원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□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

전형단계	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
필기시험	지체장애	상지	- 시험시간 연장 -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-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
		하지	-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
	뇌병변장애		- 시험시간 연장 -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-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
	시각장애		-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-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	청각장애		-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-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
면접시험	지체장애	상지	- 면접과제지 확대 제공 -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	하지	- 면접장 내 이동 지원 -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뇌병변 장애		- 면접장 내 이동 지원 - 면접과제지 확대 제공 -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시각장애		- 면접과제지 확대 제공 -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청각장애		- 안내사항 등 서면 제공 - 통역사(수화) 동반 허용 - 보조공학기기(인공와우 등) 착용 허용 -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